

 Daechang Seat Co., LTD.	회사규정	표준번호	DSCA-감사-01
		제/개정일자	2024.10.17.
	윤리 규정	제/개정번호	3
		페이지	1/4

<목 차>

1. 목적
2. 적용 범위
3. 주관부서
4. 윤리규정의 정의
5. 관련규정 적용
6. 직장윤리 기본규정
7. 윤리규정 준수사항
8. 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9.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10.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11. 윤리규정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개 정 이 력	차 수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용
	0	2012.07.02	초도 제정
	1	2023.03.13	윤리 규정 추가
	2	2023.09.01	부서 명칭 변경, 윤리 규정 추가
	3	2024.10.17	적용 범위 개정

 Daechang Seat Co., LTD.	회사규정	표준번호	DSCA-감사-01
		제/개정일자	2024.10.17.
	윤리 규정	제/개정번호	3
		페이지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 모두에 대해 직원 상호간, 협력업체 및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직원 윤리규정을 정하고 직장 윤리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디에스시 본사 및 국내·해외 생산거점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협력업체, 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업체에는 디에스시와 각종 거래를 갖는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 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 규정 집행의 주관부서는 법무감사실로 한다.

제4조(윤리규정의 정의)

회사의 중장기 목표와 경영방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 명예를 유지하고 금지와 자부심으로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을 말한다.

제5조(관련규정 적용)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리의 처리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직장윤리규정

제6조(직장윤리 기본규정)

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한다.
4. 관행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5. 자기 분야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7조(윤리규정 준수사항)

 Daechang Seat Co., LTD.	회사규정	표준번호	DSCA-감사-01
		제/개정일자	2024.10.17.
	윤리 규정	제/개정번호	3
		페이지	3/4

임직원은 직장 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직장문화를 지향하며 오해 받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 ②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이라는 자세로 매사에 임한다.
- ③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④ 직무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⑤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하여 추진한다.
- ⑥ 사내 직원간 부당한 업무 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 행위를 배격한다.
- ⑦ 국내외에서의 모든 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⑧ 사회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따라 사업을 청렴하게 수행한다.
- ⑨ 업무에 있어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⑩ 업무 관련하여 어떠한 향응 또는 접대를 받지 않는다.
- ⑪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며 독과점 행위를 일삼지 않는다.
- ⑫ 내부자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 ⑬ 자금세탁을 공모 또는 자행하지 않는다.
- ⑭ 업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기피하거나 기피를 신청한다.
- ⑮ 국제적 무역에 있어 무역 규정을 준수한다.
- ⑯ 국가간 체결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수출 통제, 규제, 제재 및 금수 조치를 따른다.
- ⑰ 수입 통제, 규제 조치 등을 준수한다.
- ⑱ 우방국에 대한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아니하며 반대한다.
- ⑲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⑳ 회계의 완전성, 투명성, 신뢰성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㉑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위조품, 가품 등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3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8조(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접수한 때는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법무감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Daechang Seat Co., LTD.	회사규정	표준번호	DSCA-감사-01
		제/개정일자	2024.10.17.
	윤리 규정	제/개정번호	3
		페이지	4/4

작성하여 법무감사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법무감사실은 통보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즉시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제10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징계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대상 및 징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징계대상

-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나. 징계내용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시 : 미신고자/해당 직원 징계조치, 협력업체 거래 중단 (재발시 영구 제명)
- 직권을 이용 금품 요구시 : 해당 직원 징계 조치
-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시 :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여부 결정

제 11 조(윤리규정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

-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확인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포상한다.
-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준수한다.